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8/
----------	------

제출년월일 : 2009. 9.).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등을 통해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
  - ‘주인없는 땅’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잡종재산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대두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전 조문을 알기 쉽게 변경·조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 명칭변경(전조).

-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명칭변경
- “보존재산” 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 으로 통합

현 행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개 정 안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명칭변경)	

### 나. 무허가 건물 대부료의 요율기준 완화(안 제26조제3항제3호).

-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 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무허가의 경우 5% → 2.5% 완화(적법건물은 2.5% 동일)

### 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기준 신설(안 제26조제4항제6호).

- 중소유통상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 물류비 절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기준 완화(안 제3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사용·대부료 조정계수가 50%→70%로 확대 되었고,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일률적 적용

마.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 신설(안 제36조제3항제5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설을 개발 또는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완화 및 신설(안 제38조제1호제4호제6호).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로 완화
-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하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규모 시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신설

사. 청사부지 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 확보를 하도록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문제됨(안 제43조).

- 도시공간 과밀등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면적, 건폐율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

**개정조례안 : 불 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임**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9. 8. 18 ~ 2009. 8. 28(10일간)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과 관련하여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 · 수익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 무상수익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간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제3장 행정재산

**제16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 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 · 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 · 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19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대부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9조제4호 · 제23조 · 제29조제1항제7호 · 제30조 · 제32조제3항 · 제38조제1항제25호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 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 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연 대부료는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임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 또는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상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
6.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른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제27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8조(토석채취료)**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거래시가를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의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
  - 라.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생산량의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75를 감면 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퍼센트 이상 100분의 75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대부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2절 매각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 ②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
-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계획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5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단,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5가구 이상 다수인이 점유한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밀집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6.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하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시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제3절 신탁

**제39조(신탁의 종류)**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혼합형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0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6장 청사관리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별 신축계획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축면적,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 ②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장 관사관리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 라 함은 시장·부시장·구청장·실·국·소장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1급·2급 관사 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의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제54조(사용료의 면제)**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도중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파괴·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8장 보칙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토지의 합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자체 없이 합필하여야 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4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 시 호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담당 노 성 우
	담당자 성명·전화	노 성 우 (행정 2173)

[별표]

시청사·종합회관·보건소 등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구·동의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2$ )

기관별 구 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팀장	식 원
시 본청	132	56.16	38.88	17.92	7.65	7.2
구 본청	99	38.88	-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2$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 이상 시 면적 $= 0.8m^2 \times$ 사용인원
상 황 실	$4 \sim 2.4m^2/\text{인}$	$2.6 \sim 1.5m^2/\text{인}$	$2 \sim 1.2m^2/\text{인}$	$1.6 \sim 1m^2/\text{인}$	$1.2 \sim 0.9m^2/\text{인}$	
대도시 (구청이 있는 시)	$2.64 \times (\text{과장급 이상 수} + \text{구청장 수})$					구 : 회의실과 겸용
구	$2.64 \times (\text{과장급 이상 수} + \text{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 ~ 200명	200명 이상		
		$0.43m^2 / \text{인}$	$0.40m^2 / \text{인}$	$0.33m^2 / \text{인}$		
엘리베이터	$(12.87 \sim 19.6m^2) \times \text{대수}$					
식 당	$1.63m^2 \times \text{공부원 수} \times 0.3$					
휴게실	$2.0m^2 \times \text{공부원 수} \times 0.15$					
민원실	$\{(6.55m^2 \times \text{민원담당공부원 수}) \times 1.1\} + \{(0.13m^2 \sim 0.2m^2 \times \text{민원인 수} \times 0.5\}$					민원인 공간 확장 가능
숙직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2 / \text{인}$	$11.52m^2 / \text{인}$	$8.64m^2 / \text{인}$			
자료실	$(0.3 \sim 0.4m^2) \times \text{공부원수}$					
참고	$0.72m^2/\text{인} \sim 0.85m^2/\text{인}$					
전산실	$9.79m^2 \times \text{담당직원 수} \times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2$ 이상					평시 충무서설로 이용

##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sup>2</sup>)

설명		설계기준					
공조기계실	연면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 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충장비실	사무공간	500m <sup>2</sup>		800m <sup>2</sup>		1,000m <sup>2</sup>	
	충장비실	6.6m <sup>2</sup>		8.4m <sup>2</sup>		10.2m <sup>2</sup>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 ~ 40%]

## 2. 시의회 청사

(단위 : m<sup>2</sup>)

구 분	실 명	면적 기준	비 고
의 원 실	a 의장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a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a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시 위 위원회 수 : 3개 군 위 위원회 수 : 1개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sup>2</sup> 이상	
	b 회의실	의원 수 × 3.3m <sup>2</sup>	면적별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b 위원회실	의원 수 × 8.2m <sup>2</sup>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m <sup>2</sup>	
	c 사무실	직원 수 × 7.2m <sup>2</sup>	
	c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m <sup>2</sup>	
	d 대기실	의원	의원 수 × 2.5m <sup>2</sup>
		기자	50m <sup>2</sup>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m <sup>2</sup>
	d 휴게실	의원	의원 수 × 2m <sup>2</sup>
		직원	직원 수 × 2m <sup>2</sup>
		방청객	방청객 수* × 2m <sup>2</sup>
		당직실	2인실 기준 15m <sup>2</sup>
	e 화장실	화장실	시 : 45~47m <sup>2</sup> 군 : 36~77m <sup>2</sup> 구 : 44~46m <sup>2</sup>
		기타	예비실(50m <sup>2</sup> )을 1개소이상 확보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장교 / 예비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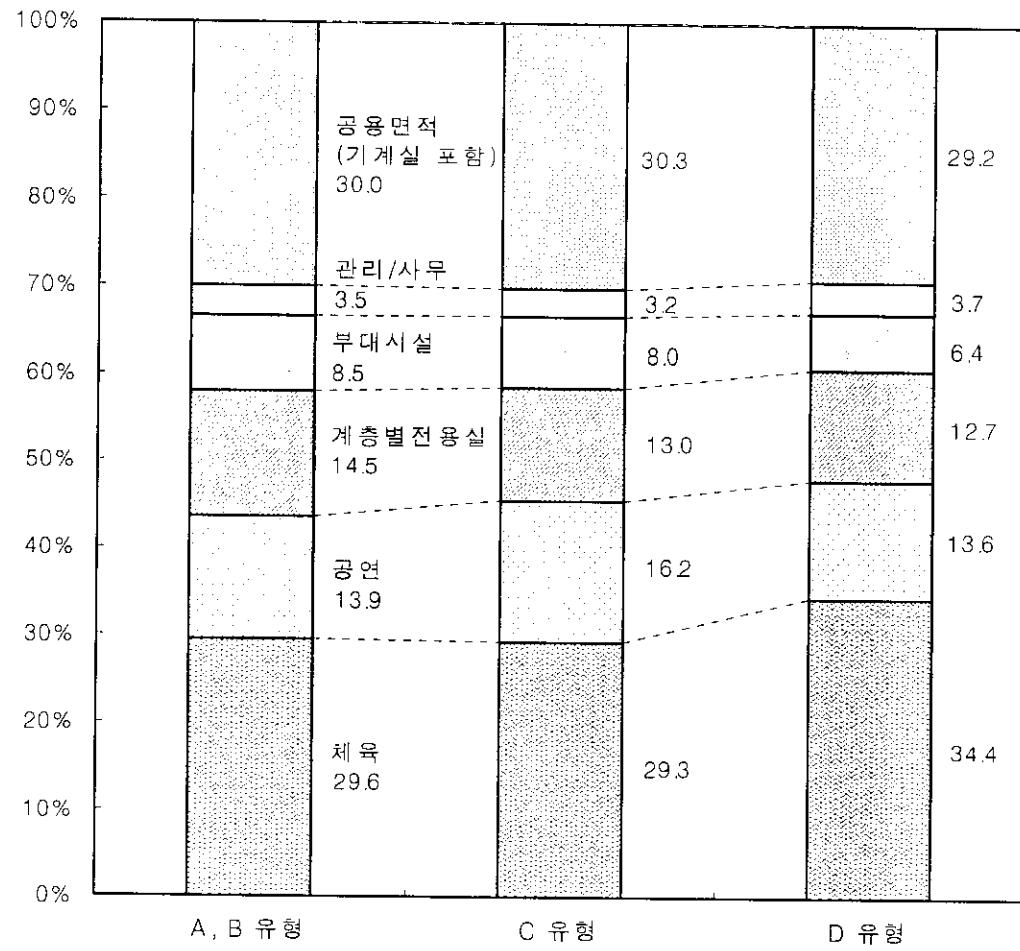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 3. 시 종합회관

####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함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B	15-3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li>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함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C	10-1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li> <li>-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li> </ul>
D	10만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li> <li>-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내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li> </ul>

####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 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 1) 공연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석	480	400	320	160
	무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개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 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 3) 부대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 4) 체육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 5) 기타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당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 4. 보건소

(단위 : m<sup>2</sup>)

구분	실 명	면적기준	
		군보건소	통합시보건소
진료활동	접수 / 수납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10.89
	대기공간	36.00	48.00
	약국조제실	11.88	13.86
	약국창고	11.88	13.86
	일반진찰실	35.64	53.46
	처치실	17.80	17.80
	치과진찰실	27.54	27.54
	치과장비실	2.70	2.70
	치과용 암실	2.16	2.16
	소독실	8.91	8.91
	예방접종실	17.82	17.82
	소아놀이실	9.90	9.90
	수유실	7.92	7.92
	화장실	31.68	31.68
	장애인용 화장실	4.86	4.86
보건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17.82
	b 상담실	35.64	35.64
	b 방사선실	49.92	81.66
진료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65.34
사무부문	d 소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읍·면장실 면적 준용
	d 전실(탕비실)	9.90	9.90
	d 소회의실	17.82	17.82
	d 사무실	직원 수 × 7.2 m <sup>2</sup>	
	d 다목적실	108	144
	d 창고	52.47	59.4
	d 여자휴게실	40	40
	d 당직실	13.86	13.86
	d 화장실	17.82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44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m<sup>2</sup>)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꽃가루은행 여성기능교육실 화상정보시스템 농기계수리지원센터 예비실	82.5 내외 72.6 내외 36.3 내외 99 내외 66 내외 66 내외 330내외 1개소(50) 정도 확보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공용 공간	c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연계공간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안산시의</u>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u>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 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u>지정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조(목적) ----- <u>안산시</u> ----- ----- ----- ----- -----.</p> <p>제2조(관리책임) ① <u>시장은</u> ----- ----- -----. ② ----- <u>총괄재산관리관을</u> ----- ----- ----- -----. ③ <u>총괄재산관리관</u> ----- ----- <u>지정에</u> ----- -----.</p>
<p>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 지사(이하 “도시사”라 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 처리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 ----- ----- -----. 제14조에 ----- ----- -----. ② 제1항에 따른 ----- ----- -----.</p>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안산시 시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 ----- 를 두되, 그 기능은 -----

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3.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일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 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일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생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법 제44조제2항에 -----  
-----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 -----  
----- .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  
----- 증감보고서 및 -----  
관한 ----- .

제7조(실태조사) ① -----  
제44조제2항에 따라 -----  
----- 관리 -----  
----- .

② 공유재산에 -----  
-----  
----- .

1. (현행과 같음)

2. 사용 · 대부료 수납 여부

3. ~ 7. (생략)

③ (생략)

1. ~ 4. (생략)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생략)

제9조(재산의 집단화) (생략)

제10조(재산의 보존) (생략)

제11조(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

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  
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생략)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  
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한다. 다  
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  
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  
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  
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 사용료 -----

3.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의 집단화) (현행과 같음)

제9조(재산의 보존)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

용) ① -----  
----- 재산조성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 제7조에 -----  
----- ----- 받아야  
----- 한다. -----  
----- -----  
----- -----  
----- -----  
----- -----  
----- 받아야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  
----- 작성한다. -----  
----- -----  
--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② (생략)

제16조(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법령에 -----  
----- 사업(도로·하천 등)과  
관련하여 -----  
----- .  
  
② ----- 제1항에 -----  
----- ----- ----- -----  
----- 때에는 -----  
----- ----- ----- .

### <작제>

###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② (현행 과 같음)

## 제14조(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 ①

---

---

---

제15조(무상사용기간) -----  
----- 제17조에

제3장 행정재산

## 제16조(관리 및 처분) -----

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 행정재산 -----  
-----  
----- .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

재산 -----  
-----  
-----  
----- .

② 행정재산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  
-----  
----- .

1.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 행정재산 -----  
-----  
----- 하되, ----- 대신할 ----- .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  
· 보존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  
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  
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잡종재산

##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② 행정 재산을 수탁자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③ 법 제27조제2항에 -----  
-----  
-----

(4) 행정재산

⑤ 제 1 항부터 제 4 항에도 -----  
-----  
-----.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  
-----  
----- 사용 -----  
-----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를 -----.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4호 · 제23조 · 제29조제1항제7호 · 제30조 · 제32조제3항 · 제35조제2항 · 제38조제1항제25호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

----- 대부받는 -----  
-----  
-----  
-----  
-----.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  
-----  
-----  
----- 제35조에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 제32조제3항 -----  
-----  
-----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  
-----  
-----  
-----  
-----  
1. -----  
----- 제38조의4제2항에 -----  
-----  
-----  
2. -----  
----- 제8조에 -----

## 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  
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  
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  
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  
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임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1. ~ 2.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 1. ~ 2. (생략)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연 1,000 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

3. ----- 제2조에 -----  
----- 승인된 -----

4. -----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연 대부료는

- ② 연 대부분 료는

## 1. ~ 2. (현행과 같음)

- ③ 연 대부분료는

### 1. ~ 2. (현행과 같음)

- ### 3. 주거용건물 또는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  
기업전용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  
는 경우

#### 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  
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 〈설설〉

##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생략)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 제2조제2호에

- ④ 연 대부료는

### 1. (현행과 같음)

2. ----- 제7호에 -----  
-- 외국인투자기업에 ----- 필요  
한 ----- 사용하게 하는 -----

3. -----  
제19조제1항에 -----  
-----  
-----  
-----  
-----  
설치자에게 -----

#### 4. (현행과 같음)

5. -----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시설  
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  
전에 사용하는 경우

## 6.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른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 이 사용하는 경우

## 제27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현행과 같음)

제28조(토석채취료) ① 제26조제1항에 -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 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해야 한다.

### ③ ~ ⑤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 —

②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라 -----  
-----  
-----  
-----

③ ----- 거래시가를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  
----- 고려  
하여 토석채취료를 -----  
-----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출하여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 제35조제2항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  
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 하는 재산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  
-----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  
-----  
-----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제4항에 따라  
-----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복합공공시설물

2. ----- 재산

3. ----- 위한 재산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

-----

-----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제34조에 -----  
-----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  
----- 100분의 70으로 한다.  
<삭제>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제37조(대부계약서) (생략)

제2절 매각

<삭제>

<삭제>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  
----- 하되 사용개시일이 -----  
-----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  
-----  
-----  
-----.

② ----- 제2항에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도 -----  
-----  
-----  
부과하였거나 -----  
-- 대부료등의 -----  
-----.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  
----- 대신할 -----  
-----.

② 대부 -----  
-----.

1. ~ 10.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계약서) (현행과 같음)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  
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4의 이자  
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  
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  
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  
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  
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  
-----  
----- 있다.



② 시가      일반재  
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1. -----  
제13호에 -----  
2. -----  
-----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 4. (생략)

〈신설〉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 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 4제2항의 규정에 따

----- 경우 -----

3. ~ 4. (현행과 같음)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 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

④ ----- 제5호에 -----  
----- 일반재산 -----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  
----- ----- .

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  
일반재산 -----  
----- ----- .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  
-----  
-----  
-----  
-----  
----- .

1. -----  
----- 제8조에 따라 -----  
-----  
----- 제2항에 -----

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안의 재산
3. (생략)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 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500 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생략)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

-----  
-----  
-----  
2. -----  
-----에 따른-----  
-----  
3. (현행과 같음)  
4. ----- 유치를 위하여 -----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제23호에 따른 -----  
-----  
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  
-----  
-----  
-----  
-----  
-----  
-----  
-----  
2. (현행과 같음)  
3. -----  
-----  
----- 하는 경우로 -----  
-----  
-----  
4. -----  
----- 1989년 1월 24일 이전  
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단, 단독 주택의 경우 200m<sup>2</sup>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5가구 이상 다수인이 점유한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밀집된 -----

은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시소유 이외의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 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사람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신설>

-----  
-----  
-----  
-----  
----- 면적이  
-----  
----- 분할매각할 수 있으  
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 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함께 매각 할 수 있다.

5. ----- 자가 -----  
-----  
-----  
-----  
----- 자의 -----  
-----.

6. 토지의 위치 · 규모 ·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필지 를 합하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시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

#### 제3절 신탁

제39조(신탁의 종류)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 -----  
-----  
----- (임대형 · 분양형 · 혼합형신탁으로 구분한다) -----

로 한다.

##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생략)

제43조(처분의 제한) (생략)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  
법」 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  
은 시·구·직속기관·사업소·동청사  
(이하 “청사”라 한다)를 신축시 위  
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  
별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  
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사정비계획  
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  
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  
당 등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  
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생략)

1. ~ 7. (생략)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0조(공유임야관리) (현행과 같음)

제41조(처분의 제한) (현행과 같음)

<삭제>

## 제6장 청사관리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 청사 -----  
-----  
-----  
-- 신축계획에 -----  
-----  
-----.  
② 제1항에 -----  
-----  
-----  
-----.

제43조(청사의 부지) ----- 건축면적,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p>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p>	<p>----- ----- -----. ③ ----- ----- <u>제1항에</u> ----- -----.</p>
<p><u>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u>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u>제45조(건축위원회의 심의)</u> ----- ----- --- <u>에 따른 건축위원회의</u> ----- -----.</p>
<p><u>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u> ① ~ ② (생략)</p>	<p><u>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u> ① ~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관사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관사관리</p>
<p><u>제50조(정의)</u> 이 조례에서 "관사" 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구청장·실·국·소장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p>	<p><u>제47조(정의)</u> ----- --- <u>부시장·구청장</u> ----- ----- -----.</p>
<p><u>제51조(관사의 구분)</u> (생략) 1. ~ 3. (생략)</p>	<p><u>제48조(관사의 구분)</u>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p>
<p><u>제52조(사용허가)</u> (생략)</p>	<p><u>제49조(사용허가)</u> (현행과 같음)</p>
<p><u>제53조(사용책임)</u>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u>제50조(사용책임)</u> (현행과 같음) ----- --- <u>다음사항을</u> ----- ----- -----. 1. ~ 4. (현행과 같음)</p>
<p><u>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u> (생략)</p>	<p><u>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u> (현행과</p>

	같음)
<u>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생략)</u>	<u>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가 <u>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u>	3. ----- <u>제50조에</u>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u>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생략)</u>	<u>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u>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 <u>에어 콘</u> 등 대규모 기계·기구의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1. ----- <u>에어 콘</u>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u>응접셋트</u> ,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4. <u>응접세트</u> , ----- ----- -----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u>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u>	<u>제54조(사용료의 면제)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 ----- -----.</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u>	<u>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 ----- <u>제53조에</u> ----- ----- -----.</u>
<u>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u>	<u>제56조(인계인수 등) ① 제52조에 ----- ----- -----</u>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장 보착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

-----  
-----.  
② 제1항에 -----  
-----  
-----  
-----  
-----  
-----  
----- 확인하여야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57조(변상조치) -----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파괴·훼손 또는 망실한 -----  
-----  
-----.

제58조(준용) -----  
-----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를 -----  
-----.

## 제8장 보착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  
----- 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 -----.

② -----  
----- 점유자는  
변상금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가. ~ 나. (생략)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65조(토지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자체 없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

변상금의 분할 납부는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경우에는  
분할납부 -----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보상금은 3천만원 -----.

1. ----- 600  
만원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 300만원 -----

② ----- 은닉재산이 -----  
----- 후에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토지의 합필) -----

----- 자체 없이  
----- 합필하여야 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

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  
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  
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다.

### 제67조(준용) (생략)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별표] (생략)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each row.

### 제64조(준용) (현행과 같음)

## 제65조(시행규칙) ----- 시행에 -----

[별표] (현행과 같음)

## 부 칙

## <신설>

## <신설>

부 친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대부분 등의 산정기준에 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폐지조례) 안산시시유재산관리조례, 안산시관사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삭제〉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부 칙(1993.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부 칙(1994.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삭제〉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삭제〉

부 칙(199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부 칙(199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부 칙(1997.10.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삭제〉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대부 계약 또는 사용 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매매계 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 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 터 적용한다.

부 칙(2002.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

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  
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  
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4조

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  
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문  
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

조제1항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  
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2.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81
----------	------

제안년월일 : 2009. 9. 18 .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일부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조문 제목과  
같게 수정하며,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함.

## 2. 주 요 내 용

-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  
(안 제7조)
- 재산의 집단화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의미 없는 단어를 삭제함(안 제8조)
- 조문 제목에 맞게 일부 규정 내용을 수정함(안 제14조제1항)
- 일부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함(안 제20조제1항  
내지 동조제2항)
-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5조)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조사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여기저기”를 삭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무상수익허가 대상재산”을 “수익허가 대상재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내지 동조 제2항 중 “전대”를 “다시 대여”로 각각 한다.

제45조 제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경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동조 중 “「안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안산시 경관 조례」와 「안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경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u>조사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u></p>	<p>제7조(실태조사) ① ----- ----- ----- <u>조사하여</u> <u>야 한다.</u></p>
<p>제8조(재산의 집단화) <u>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u></p>	<p>제8조(재산의 집단화) &lt;삭제&gt;----- ----- ----- -----.</p>
<p>제9조 ~ 제13조 (생략)</p>	<p>제9조 ~ 제13조 (원안과 같음)</p>
<p>제14조(무상사용 · 수익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 <u>무상수익허가 대상재산은</u>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p>	<p>제14조(무상사용 · 수익허가대상재산)            ① ----- ----- ----- <u>수익허가 대상재산</u> ----- -----.            ② (원안과 같음)</p>
<p>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사람에게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⑤ (생략)</p>	<p>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 ----- <u>다시 대여</u> ----- -----.            ② ----- ----- <u>다시 대여</u> ----- ----- <u>다시 대여</u> ----- -----.            ③ ~ ⑤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제45조(<u>건축위원회의 심의</u>)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45조(경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 ----- 「안산시 경관 조례」와 「안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경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